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70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 허종식·김정호·박용진

김교흥・어기구・유동수

정일영 · 박찬대 · 이성만

배진교 • 이용선 • 고영인

김성주 · 강병원 · 정춘숙

김민석 • 배준영 • 송영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역학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개정('20.9월 시행)에 따라 시군구도 역학조사관 배치의무화 되었으나, 신규 역학조사관 중 다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는 2년 과정의 역학 조사관 교육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임명하지만, 법령상 수습역 학조사관의 정체성, 직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과정 수료를 독려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은 수습역학조사관이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 법적 권한 행사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은 민 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 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 (안 제8조,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법률 제 호

및 제4항"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로"를 "민간전문가 등으로"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의 "제60조의2제3항 각 호"를 "제60조의2제1항·제2항

제60조의2제3항 중 "역학조사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역학조사관은 제4항"을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을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역학조사관"을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

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 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	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u>민간전문가로</u> 구성된 감염	민간전문가 등으로
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제	① 제60조의2
<u>3항 각 호</u> 에 해당하는 사람에	<u>제1항・제2항 및 제4항</u>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생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서 임명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
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
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
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u>⑤</u>
<u>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u>
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7조제
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u></u>

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u>제4항에 따른 역학</u> 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 다.

- ⑥ 역학조사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3</u> <u>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u>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 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 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
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⑦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
관은 제5항
<u>8</u>
<u>제1</u>
<u>제1</u> 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
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
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 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
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 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 사관
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9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및 수급역학조사관 및 수급역학조사관 및 수급역학